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
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41호로 2023년 5월 4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·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느린학습자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 ~ 안 제7조)

마.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5. 2. ~ 5. 6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본 조례가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함.
- 안 제5조(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)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는 정책의 목표·방향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.
- 안 제6조(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함.

- 안 제7조(위탁 등)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9조(공동사업 추진) 및 안 제10조(느린학습자 지원 사업)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느린학습자는 “느린학습자”, “경계선 지능인”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, 통상 지능검사(IQ) 기준 71이상 84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분류됨.¹⁾
- 2019년 기준, 전국적으로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학습능력은 하위 8% 수준으로 집중력부족, 저조한 학습 능력 및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음.²⁾
-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-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2016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는 대상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그래서 본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평생교육법」에 근거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결과,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“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”으로 규정하고 있음

2) 동북권 NPO 「느린학습자 기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」 (2019)

참 고 자 료

1 초·중등교육법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 2. 3.>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2. 3.>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
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>

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 <신설 2016. 12. 20., 2021. 3. 23.>

제4조(평생교육의 이념)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.

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평생교육은 정치적·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8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4. 23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6. 8.>